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 김은혜·김정재·박정하

조지연 • 유용원 • 김성원

박대출 • 김예지 • 정희용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 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였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여 재건축부 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중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추산액"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을 "이 법"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⑥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8호를 삭제한다.
- ⑦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추산액(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추산액"으로 한다.

-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9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